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829호
2. 제출자 : 고광민 의원
3. 제출일자 : 2023. 5. 30.
4. 회부일자 : 2023. 6. 5.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강의실 면적 제한 기준은 1995년에 처음 수립된 후 28년째 바뀌지 않는 등 그동안 사회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현재 서울 관내 다수의 학원 현장에서는 수강 신청 및 자리 선점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강의실 내 학생 과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원 강의실 단위 면적 최대 상한 기준을 삭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Ⅲ. 주요내용

- 학원 강의실 단위면적 최대 상한 기준을 삭제함(안 제4조 제1항)

###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입법예고(2023. 6. 8. ~ 6. 12.) 결과 :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고광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829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원 강의실의 단위면적 최대 상한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강의실 내 학생 밀집도를 완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sup>1)</sup>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 이러한 학원의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학원법 제8조<sup>2)</sup>에 따라 시·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 ① 생략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사. (생략)

2.~6. (생략)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현행 조례 제4조3)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학원 시설 기준 중 강의실의 경우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강의실의 면적기준은 지난 1996년 학원법이 개정<sup>4)</sup>되면서 그동안 학원법에 규정되어 있던 시설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이 시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에서 거의 동일한 면적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2] 지역별 학원 강의실 단위 면적 기준

지역	구분	기준	지역	구분	기준
서울	면적	30~135㎡	부산	면적	30~135㎡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대구	면적	30~135㎡	인천	면적	30~135㎡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광주 (2008.1.1. 시행)	면적	30㎡~	대전 (2008.8.8. 시행)	면적	30~150㎡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울산	면적	30~135㎡	세종	면적	30~135㎡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경기도	면적	30~135㎡	강원도	면적	30~135㎡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충북	면적	30~135㎡	충남	면적	30~135㎡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전북	면적	30~135㎡	전남	면적	30~135㎡

3)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강의실의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당 최소 10제곱미터 이상(평생직업교육 학원의 성인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제외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6. (생략)

②~③ (생략)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1996. 1. 1.] [법률 제4964호, 1995. 8. 4., 전부개정]

제8조 (시설기준) ①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른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市·道”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의 조례는 시설규모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경북 (2008.6.16. 시행)	면적	30~135㎡	경남	면적	30~135㎡
	수용인원	1㎡당 1.2인 이하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제주	면적	30~135㎡	* 출처: 각 시도 조례		
	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 즉 현행 서울시의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 라는 면적 기준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의 표준 면적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강의실 면적기준의 상한선이 없고,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타 시도보다 조금 넓은 기준인 150제곱미터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 한편 이러한 강의실의 면적기준은 동 조례의 2009년 시행<sup>5)</sup> 이후 현재까지 14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것으로 그동안 영양 섭취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신장과 몸무게 등 체격 조건이 급격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의 면적기준은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원 공간의 밀집도는 감염병 전염이나 공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sup>6)</sup>에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강의실 면적기준 상한기준을 삭제한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5)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09.9.24.] [서울특별시조례 제4868호, 2009. 9. 24., 일부개정] 제3조의3(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하되,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6. (생략)

② ~ ③ (생략)

6) 킬러문항 강의 학원, 200개 책상이 50cm 간격 빼곡…안전 뒷전, 동아일보, 2023.6.22., “코로나보다 공부 더 중요해”, 이데일리, 2020.3.27., 송파구 학원 18명 집단감염…밀폐된 강의실 장시간 수업, 뉴스1, 2021.2.17., 100여명 빼곡 노량진 강의실…“기침만 해도 깜짝”, 매일경제, 2020.2.9.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9742, 2023. 6. 22.).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이 준 석 (02-2180-8263)	입법조사관	이 현 주 (02-2180-8272)
----------	-------------------------	-------	-------------------------